

# 일방 당사자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 타방 당사자인 미국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간

## 경쟁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하 “한국 공정위” 라고 함) 타방 당사자인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이하 통칭하여 “미 경쟁기관들” 이라 함)는 (각각 “경쟁당국” 이라 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보여진 바 있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 긴밀한 경제 관계와 협력을 존중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양국의 경쟁법 집행이 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각국 국민의 경제적 후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유의하며,

한국 공정위와 미 경쟁기관들이 경쟁법 집행 활동을 협력 및 조정한다면 독립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각자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한국 공정위와 미 경쟁기관들 간 경쟁법 및 경쟁정책 관련 원활한 의사전달이 양 경쟁당국의 관계 개선 및 강화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본 양해각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협력하고자 한다.

### 제 1 절

#### 협력과 조정

1. 한국 공정위와 미 경쟁기관들은 경쟁제한적 행위의 적발과 각국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공조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정한다. 본 양해각서에서 경쟁법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미 경쟁기관들의 경우, 셔먼법 (the Sherman Act, 15 U.S.C. § § 1-7), 클레이튼법 (the Clayton Act, 15 U.S.C § § 12-27), 윌슨 관세법 (the Wilson Tariff Act, 15 U.S.C. § § 8-11), 연방거래위원회법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15 U.S.C. § § 41-58)과 이의 개정을 의미하며 해당 법이 불공정한 경쟁 방법에 적용되는 범위에 한정한다. 2) 한국 공정위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No. 3320, 1980)과 이의 개정을 의미한다. 양 경쟁당국들은 자국 법 체계 및 각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의 효과적 집행을 촉진하고 서로의 경쟁집행정책 및 활동의 이해를 돕는 정보를 상황에 맞게 공유하고자 한다.

2. 미 경쟁기관들 중 한 기관과 한국 공정위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둘 다 집행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양 기관은 상황에 맞게 그들의 집행활동을 조정할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
3. 각 경쟁당국은 각자의 집행활동 시, 자국 법령의 틀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중요한 이익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방 경쟁당국 또는 경쟁당국들의 집행목표와 중요한 이익을 신중히 고려하고자 한다.
4. 한국 공정위 또는 미국 경쟁기관들은 다른 계약, 조약, 협정, 또는 이에 적용되는 관행에 의거 서로에게 지원을 구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 2 절

### 비밀유지

1. 본 양해각서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정위와 미국 경쟁기관들은 그러한 정보 공유가 정보 보유 당국의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당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방 경쟁당국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양 경쟁당국간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정보를 받는 당사자는 자국 준거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공유되는 정보의 공개를 제3자가 요청할 시, 각 경쟁당국은 자국 준거법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 제 3 절

### 의사전달

1. 한국 공정위와 미국 경쟁기관들은 각 경쟁당국에 의해 제안된 정책적 변화와 중요한 입법 제안을 포함하여 각국의 경쟁정책 및 집행에 있어 중요한 전개상황을 타방 경쟁당국에게 통지하고자 한다.
2.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한국 공정위와 미 경쟁기관들은 각자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교환하고자 한다.
3. 각 경쟁당국은 타방 국가의 경쟁당국 또는 경쟁당국들에게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요청시 해당 요청의 이유와 절차적 시한 또는 다른 제약 사항으로 인해 협의를 신속히 요구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같은 협의 요청이 있을 시 각 경쟁당국은 신속히 협의에 응하며, 본 양해각서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태도로 협의에 임하고자 한다.
4. 본 양해각서의 진행을 위한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공정위와 미국 경쟁기관들은 각자 연락담당관을 지정하고자 한다.
5. 본 양해각서에 의거한 의사전달은 실무급 혹은 고위급에서 비공식적 수단(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기타 수단)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6. 한국 공정위와 미국 경쟁기관들의 당국자들은 각자의 경쟁법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법집행 활동이나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주기적 만남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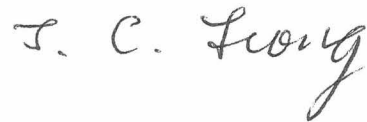
#### 제 4 절

#### 일반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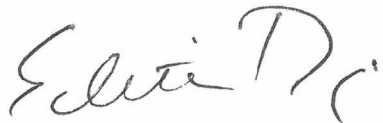
1. 본 양해각서에 의거한 협력은 본 양해각서를 서명한 일자로 발효된다.
2. 본 양해각서는 협력의 기본체계를 권고하고자 한다. 한국 공정위와 미국 경쟁기관들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에 있어 완전한 자유재량을 가지며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그 어떤 것도 기존의 법률, 계약, 또는 조약을 변경하거나 국제법상 또는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국내법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고자 하지 아니한다.
3. 한국 공정위와 미국 경쟁기관들은 본 양해각서의 이해 및 이행 관련 질의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

2015년 9월 8일 워싱턴 DC에서 한국어, 영어로 각 3통 서명되었으며, 국문본과 영문본 모두 정본으로 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

